

「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1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정균)

가. 제안이유

-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,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이 직접 규정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(안 제2조제1항)
 -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
-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(안 제4조제1항)
 - 상위법에 직접 규정된 제1항을 삭제함
-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(안 제5조제1항)
 - 취득시점 연장 : 2017년 12월 31일 ⇒ 2019년 12월 31일
-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(안 제7조)
 - 취득시점 연장 : 2017년 12월 31일 ⇒ 2019년 12월 31일

○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(안 제9조)

- 감면기간 연장 : 2018년 12월 31일 ⇒ 2019년 12월 31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○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이 직접 규정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2018년 12월 31일”을 “201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1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1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2018년 12월 31일”을 “201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